

정하고 있으나 허가기간 동안 사용하지 않고 기간이 경과한 후 사실상 사용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사용료를 반환 요구할 경우까지 반환한다면 육교사용을 필요로 하면서도 허가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다른 시민의 불이익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며, 사용료의 반환은 허가의 철회 또는 허가면적이나 허가기간의 변경허가에 의한 것이므로 수허가자의 철회 또는 허가내용 변경에 관한 의사표시를 조건부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5) 제5항 :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준용 조항 신설

사용료 부과·징수개념이 도로점용료와 같으므로 “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는 조례의 준용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 기타

(1)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없음.

허가의 취소이므로 기납부한 사용료를 몰수한다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별도의 법칙조항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별칙근거도 없이 납부한 사용료를 몰수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사용료 반환에 관한 내용이 있어야 할 것임.

종합의견

1.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 개정 필요

조례 제4조제4항의 경우는 육교 사용허가 후 공익상 필요에 따라 허가권자가 허가내용을 변경하여 다른 육교사용을 권유하였으나, 수허가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기납부한 사용료를 조례 제9조에 의거 반환토록 하였으나, 조례 제7조(허가의 취소)에 의거 허가를 취소할 경우는 기납부한 사용료 반환조항이 없으므로 제7조 후단 또는 제9조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2. 개정조례안 제9조제4항의 보완

육교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제9조 4항은 사용허가의 철회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사용료를 반환할 경우 수허가자의 의사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

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철회하거나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와 제7조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를 포함하여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증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육교사용료징수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4조제4항 후단을 삭제한다.

제 8조를 삭제한다.

제 9조제1항 중 “사용기간은 14일 이내로 하고 제1회에 한하여 7일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를 “사용기간은 행사개시일 30일전부터 행사 종료일까지의 기간 이내로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 중 “1년의 범위안에서 육교사용을” “육교사용을”로 하며, 동조제3항 중 “점용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점용료에 해당하는 사용료”로 하고, 동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내용을 철회하거나 사용기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와 제7조에 의한 허가취소의 경우를 포함하여 육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는 반환한다.

⑤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는 서울특별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의 예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육교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육교사용 허가신청이 접수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서울特別市下水道使用條例中改正條例案